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0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조승환·이종배·김선교

서일준 • 이성권 • 유용원

김성원 • 인요한 • 이인선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

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병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징집에 의한 입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집에 의한 입영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1년 6개월을 한도로 한다)은 동거 기간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	②
인과 상속인이 <u>대통령령으로</u>	<u></u> 「병역법」 제
<u>정하는 사유</u> 에 해당하여 동거	2조제1호에 따른 징집에 의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한 것으로 <u>보되, 그 동거하</u>	<u>사유</u>
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	
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u>본다</u> . <u>이 경우 그 동거</u>
한다. <후단 신설>	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을 적
	용할 때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집에 의한 입영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1
	년 6개월을 한도로 한다)은 동
	거 기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